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9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8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과장 최미애(043-870-5510), 이해주 주무관(5517)

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.

- 국가기술표준원 · 지자체와 함께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 -

□ 정부와 디방자치단체는 9. 9.(수)부터 9. 11.(금)까지 3일간 추석 대비 저울 특별점검서비스*를 한다.

* 부산 자갈치 시장 등 9 지역은 지자체·검정기관 등과 합동점검, 기타 2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.

○ 이번 점검서비스는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,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산시장 위주로 상거래용 저울특별점검서비스(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)를 시행한다.

- 최근 수입수산물(새우, 냉동수산물 등)의 중량속임이 문제가 되었는데다, 잦은 물 사용으로 인해 저울의 고장 우려가 있어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다.

※ 추석점검 불량률(불량저울수/검사저울수): 1.2%('13년) ⇒ 1.9%('14년)

(사례) 최근 '물코팅 새우살의 진실' (8월 KBS 보도) 및 냉동수산물 '물코팅' 해 부당이득업자 징역(8월 연합뉴스) 등 수입수산물에 중량을 속이는 문제가 있음.

※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식품의 허위중량 단속(식약처)과 함께 저울점검을 통해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확보.

□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점검(오차검사)과 저울사용법을 안내하고,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*를 홍보한다.

※ 저울점검내용: 봉인훼손, 스프링조작, 정기검사 수검 여부, 법정단위사용 확인 등

* 자체정기검사사업자: 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현행 강원지방우정청 등 8개 사업자 지정

○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해 저울을 조작·변조한 경우에는 중대위반으로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되, 단순위반은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한다.

○ 또한, 시장상인회에는 저울 점검방법 등을 직접 지도함으로써,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활용하여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제대식)은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
※ 붙임-2015년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지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**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** 과장(☎ 043-870-5510), 이해주 주무관(☎ 043-870-5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2015년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지침**

1. 점검 개요

○ 기　간: '15.9.9.(수)~9.11.(금, 3일간)

○ 대　상: 상거래용 저울(전기식지시 저울, 접시지시 저울 등)

○ 장　소: 추석 전 상품 거래가 많은 수산시장, 전통시장을 점검하고, 저울 사용자 자율관리제도(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) 홍보

※ 각 지자체는 지난 해 위반 사업자가 많은 지역 8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

2. 사전 준비사항

○ 합동점검팀 집결 장소, 시간 및 연락처 사전 확인

○ **준비물**

- 계량검사공무원: 부정계량기 표시증
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: 검사용 분동 및 교정성적서 사본
- 한국계량측정협회: 오차검사 기록지, 자체정기검사사업자지정제도 홍보리플렛 및 설문지

○ **주요 역할**

- 계량검사공무원: 조사목적 안내, 부정계량기 표시증 부착 등
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: 오차검사, 기물번호 확인(부정계량기 경우)
- 한국계량측정협회: 오차검사 기록
- 국가기술표준원, 소비자감시원: 저울 자율관리 홍보, 설문조사

3. 점검내용

○ 저울의 변조, 검정·정기검사 미수검 및 사용오차 초과 등 위반사항

- **(변조)** 봉인 훼손,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 조작 확인
- **(미검정)** 검정필증 부착 여부 확인
- **(정기검사 미수검)** 정기검사필증 및 검사 연도 확인
- **(사용오차 초과)** 오차검사를 통하여 사용오차 초과 여부 확인
- **(비법정단위 사용)** 비법정단위로 표시 여부 확인

4. 점검방법

○ **자체점검**(279개 시·군·구청)

- 시·군·구청은 저울 특별점검지침에 따라 관내 수산시장, 전통시장 저울을 자율적으로 점검
- 17개 시·도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우리원에 9.22.(화)까지 통보

○ **합동점검**(합동점검팀)

- 합동점검반(우리원 담당자, 시·군·구청 계량검사공무원, 협회 및 연구원 직원, 계량소비자감시원)은 9개 지역 수산시장, 전통시장 저울을 점검
- 계량측정협회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우리원에 9.22.(화)까지 통보

○ **변조 여부 확인**: 봉인 훼손, 눈금판 교체, 스프링 조작 등

전기식지지 저울(요금형) 봉인	접시지시 저울 봉인
	

○ **검정 및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**

- 2013년 또는 2014년 제작된 저울은 2014년 정기검사 면제 대상

검정증인(KC마크)	검정필증	정기검사필증
		

○ 설치 상태 확인

- 사용 전 눈금을 "0"에 맞추고 계량하는지 확인
-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
-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확인

영점 확인		수평 확인	
전기식지시 저울	접시지시 저울	전기식지시 저울	접시지시 저울
			

○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확인

- 지시부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

○ 사용오차 검사

① 명판 확인

전기식지지 저울		접시지시 저울	
최대용량	6/15 kg	최대용량	2 kg
검정눈금(e)	2/5 g	검정눈금(e)	100 g
저울등급	Ⅲ등급	저울등급	ⅢⅢ등급
검정증인	KC 압인	검정증인	검정필증
제작년월	2014.12	제작년월	2013
기물번호	MM2927	기물번호	201301029
			

② ⅢⅢ등급 또는 ⅢⅢⅢ등급 저울 검사용 M급 분동 준비

※ 교정 또는 기준기검사를 받은 M급 분동세트(100 g ~ 10 kg, 검정기관에서 준비, 교정성적서 사본 또는 기준기 검사 합격증 사본)



③ 검사 측정점 선정 및 사용오차 검사

- 검사 측정점 선정

※ ⅢⅢ등급: 500눈금 이하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, 2,000눈금 초과

※ ⅢⅢⅢ등급: 50눈금 이하,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, 200눈금 초과

- 사용오차 검사

※ ⅢⅢ등급 저울은 500눈금 이하에서 1눈금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에서 2눈금, 2,000눈금 초과에서 3눈금 이내에 있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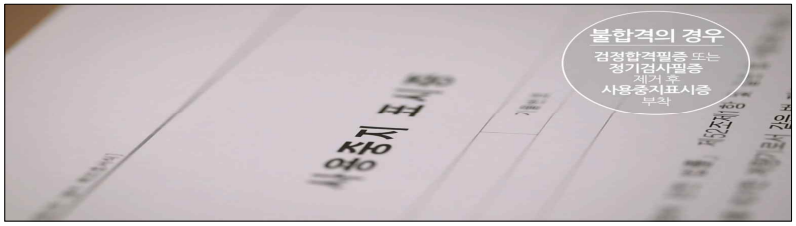
※ ⅢⅢⅢ등급 저울은 50눈금 이하에서 1눈금,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에서 2눈금, 200눈금 초과에서 3눈금 이내에 있어야 함

Ⅰ	ⅡⅡ	ⅢⅢⅢ	ⅢⅢⅢⅢ	합격 기준
0 ≤ m ≤ 50 000	**0 ≤ m ≤ 5 000**	0 ≤ m ≤ 500	0 ≤ m ≤ 50	**± e 이내**
50 000 < m ≤ 200 000	**5 000 < m ≤ 20 000**	500 < m ≤ 2 000	50 < m ≤ 200	**± 2e 이내**
200 000 < m	**20 000 < m ≤ 100 000**	2 000 < m ≤ 10 000	200 < m ≤ 1 000	**± 3e 이내**

4. 점검결과 처리원칙

○ **부정계량기의 처리**(법 제52조)

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의 "사용중지 표시증"을 부착하여, 부정계량기 사용을 방지



○ 부정계량기 사용자는 시·군·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따라 벌칙, 과태료 부과 및 표시명령 등 행정조치

○ **단순위반**(과태료 부과보다는 개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)

- 정기검사필증이 없는 경우: 검정이나 교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
-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: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
- 비법정단위로 표시되는 경우: 법정단위 표시 명령(법 제6조제4항)

○ **중대위반**(행정처분 후 협회에 위반사항 통보)

- 계량값을 속일 목적으로 저울을 변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봉인을 훼손한 경우
 ⇒ 행정처분 ⇒ 한국계량측정협회(불법·불량 계량기 신고센터)에 통보



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
 -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저울을 변조한 사업자(수리업자, 상인)
 - 변조 사실을 알고 저울을 사용한 사업자(상인)

*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
 - 변조할 목적으로 저울의 봉인을 훼손한 경우(수리업자, 상인)

○ **점검결과 보고**

- 시·도에서 점검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9.22.(화)까지 우리원에 통보

○ <참고> **과태료 부과기준**(시행령 제53조 별표 28)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	법 제76조제2항제1호	10만원	20만원	50만원
비법정단위 표시 저울 사용	법 제76조제1항제4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사용오차 초과 저울 사용	법 제76조제1항제5호	10만원	20만원	50만원
정기검사 받지 않은 저울사용	법 제76조제2항제13호	10만원	20만원	50만원
재검정 유효기간 지난 저울 사용	법 제76조제2항제14호	10만원	20만원	50만원

붙임 2 저울 오차검사 측정점 및 합격 기준 예

저울 구분	최대용량	검정눈금	측정점		합격기준 (오차값)
접시지시 저울 (Ⅲ)등급	1 kg	5 g	1차	100 g	± 5 g 이내
			2차	500 g	± 10 g 이내
			3차	1 kg	± 15 g 이내
	2 kg	10 g	1차	100 g	± 10 g 이내
			2차	1 kg	± 20 g 이내
			3차	2 kg	± 30 g 이내
	5 kg	20 g	1차	1 kg	± 20 g 이내
			2차	3 kg	± 40 g 이내
			3차	5 kg	± 60 g 이내
	10 kg	50 g	1차	1 kg	± 50 g 이내
			2차	5 kg	± 100 g 이내
			3차	10 kg	± 150 g 이내
	20 kg	100 g	1차	1 kg	± 100 g 이내
			2차	10 kg	± 200 g 이내
			3차	20 kg	± 300 g 이내
	30 kg	100 g	1차	1 kg	± 100 g 이내
			2차	15 kg	± 200 g 이내
			3차	30 kg	± 300 g 이내
전기식지시 저울 (Ⅲ)등급	2 kg	1 g	1차	500 g	± 1 g 이내
			2차	1 kg	± 2 g 이내
			3차	2 kg	± 2 g 이내
	5 kg	2 g	1차	1 kg	± 2 g 이내
			2차	2 kg	± 4 g 이내
			3차	5 kg	± 6 g 이내
	10 kg	5 g	1차	1 kg	± 5 g 이내
			2차	5 kg	± 10 g 이내
			3차	10 kg	± 10 g 이내
	6 kg/15 kg	2 g/5 g	1차	1 kg	± 2 g 이내
			2차	6 kg	± 6 g 이내
			3차	15 kg	± 15 g 이내
	20 kg	10 g	1차	1 kg	± 10 g 이내
			2차	10 kg	± 20 g 이내
			3차	20 kg	± 20 g 이내
	30 kg	10 g	1차	1 kg	± 10 g 이내
			2차	20 kg	± 20 g 이내
			3차	30 kg	± 30 g 이내

붙임 3 상인회 저울 자율관리 및 올바른 사용법 안내 자료



정확한 계량으로
의심은 사라지고,
웃음은 커져갑니다!



상거래에는 검정 ·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만 사용하세요



봉인이 훼손된 저울은 사용하지 마세요



영점을 맞춘 후 사용하세요



안정된 바닥에 설치하고 수평을 맞춘 후 사용하세요



- **저울을 변조하거나 변조 저울을 사용하면**
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**미등록자가 수리하거나, 봉인을 훼손하면**
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**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하면**
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**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**
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불법계량기 신고센터 **02.3489.1300** KATS 국가기술표준원 KASTO 한국계량측정협회